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3. 이정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정현의원)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

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

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 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제1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 명문화

- 개정안은 우정사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관련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에 우체국망을 활용하여 우정사업 조직이 범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대행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전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특정하여 정하게 되면 오히려 범위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구체화하여 정할 사유가 있는지와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완할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개정안과 같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탁·대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업 추진력과 수요기관 접근성을 높여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추진체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자체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한편, 고령화·양극화로 복지수요는 급증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높은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조성된 우체국 인프라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17조의3제4항은 플랫폼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정사업본부 수행 공공서비스 중 민간 기업 등과 협업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요청 대상으로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개정안의 플랫폼은 우체국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에 관한 정보제공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산 지원 등과 같은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복지우편 서비스

와 같이 수요기관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수행 확대가 지체되는데 수요기관의 재정여건 부족이 주요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조치가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효과가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용도에 한해 이익잉여금의 다른 특별회계 전출 허용

- 개정안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우체국예금의 누적 이익잉여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의무 해제에 따른 여유재원을 우편사업 특별회계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우편사업의 취약한 재정 여건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우체국예금 이용자의 예금자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차적으로 예금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 이익잉여금의 전출 확대가 타당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이익잉여금의 전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용도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전출의 규모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제14조의2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익잉여금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의 누적 적립액이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표현이 다르게 사용되어 해석상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법문 표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용어를 일치시키는 자구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현)

플랫폼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청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이익잉여금을 한 조항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용어의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음.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쳐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문 표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용어를 다른 조항에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에 단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안 제14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4항 및 제5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 중 “이익잉여금을 제2항에”를 “제2항에”로, “이익잉여금의”를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로 한다.

안 제17조의3제4항 전단 중 “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를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익잉여금을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u>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u>제2항</u> <u>에</u> ----- ----- ----- <u>제1항에 따른</u> <u>이익잉여금의</u> ----- ----- ----- -----.
<u><신설></u>	제17조의3(공공서비스 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u>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호바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플랫폼(이하</u>	제17조의3(공공서비스 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플랫폼”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
폼을 통하여 제공
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
요조사 및 집행
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
황

2. 우정시설 등 우
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
서비스 활용 지
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
관의 장은 플랫폼
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
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
관의 장은 플랫폼
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료를 관계 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을 말
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출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플랫폼 의 구축·운영에

[illegible]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u>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절차 및 그 밖에</u> -- ----- ----- ----- --.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u> 사. ~ 카. (현행 바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2. (생략)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 ②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u>

<신 설>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